

『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0월 2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10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10월 31일

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읍·면 또는 리에 걸쳐 있어
- 해당 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.

다. 주요내용

- 낙정지구
 - 옥성면 구봉리 일부(56필지 93,191㎡)를 도개면 용산리에 편입
 - 도개면 가산리 일부(22필지 28,878㎡)를 도개면 용산리 편입
- 생독 1, 2지구 / 신기지구
 - 선산읍 생곡리 일부(13필지 2,301㎡)를 선산읍 독동리 편입

- 선산읍 독동리 일부(1필지 484m²)를 선산읍 생곡리 편입
- 선산읍 생곡리 일부(4필지 428m²)를 선산읍 신기리 편입
- 선산읍 신기리 일부(2필지 652m²)를 선산읍 생곡리 편입

○ 선산4지구

- 선산읍 화조리 일부(26필지 22,045m²)를 선산읍 동부리 편입
- 선산읍 동부리 일부(6필지 842m²)를 선산읍 화조리 편입

○ 강정1, 2지구

- 고아읍 관심리 일부(48필지 32,326m²)를 고아읍 예강리 편입
- 고아읍 관심리 일부(27필지 11,305m²)를 고아읍 이례리 편입
- 고아읍 예강리 일부(28필지 15,771m²)를 고아읍 관심리 편입
- 고아읍 예강리 일부(23필지 16,892m²)를 고아읍 이례리 편입
- 고아읍 이례리 일부(8필지 3,742m²)를 고아읍 예강리 편입

○ 초곡지구

- 옥성면 초곡리 일부(41필지 12,528m²)를 옥성면 농소리 편입
- 옥성면 농소리 일부(24필지 8,371m²)를 옥성면 초곡리 편입

○ 낙산지구

- 해평면 낙산리 일부(9필지 990m²)를 해평면 일선리 편입
- 해평면 일선리 일부(2필지 666m²)를 해평면 낙산리 편입
- 도개면 신림리 일부(16필지 3,007m²)를 해평면 일선리 편입
- 선산읍 독동리 일부(76필지 78,489m²)를 해평면 낙산리 편입

○ 산양지구

- 해평면 산양리 일부(5필지 976m²)를 해평면 월곡리 편입
- 해평면 월곡리 일부(14필지 9,508m²)를 해평면 산양리 편입

○ 해평1, 2, 3지구

- 해평면 괴곡리 일부(38필지 14,211m²)를 해평면 문량리 편입
- 해평면 문량리 일부(22필지 7,886m²)를 해평면 괴곡리 편입

- 해평면 오상리 일부(3필지 261m²)를 해평면 문량리 편입
- 해평면 문량리 일부(9필지 8,490m²)를 해평면 해평리 편입
- 해평면 오상리 일부(32필지 36,887m²)를 해평면 해평리 편입
- 해평면 문량리 일부(31필지 16,111m²)를 해평면 오상리 편입
- 해평면 해평리 일부(5필지 1,192m²)를 해평면 문량리 편입
- 해평면 해평리 일부(16필지 15,418m²)를 해평면 오상리 편입
- 산동면 성수리 일부(32필지 36,831.1m²)를 해평면 문량리 편입
- 해평면 문량리 일부(67필지 18,614m²)를 산동면 성수리 편입
- 산동면 성수리 일부(13필지 7,530m²)를 해평면 괴곡리 편입
- 해평면 괴곡리 일부(8필지 1,224m²)를 산동면 성수리 편입

라. 참고사항

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2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성 수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읍·면 또는 리에 걸쳐 있어
- 해당 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낙정지구, 생독1, 2지구/신기지구, 선산4지구, 강정1, 2지구, 초곡지구, 낙산지구, 산양지구, 해평1, 2, 3지구내 필지를 해당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새로운 읍·면 또는 리에 편입하는 내용임.
(23개리 727필지 508.047.1m²)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둘 이상의 읍·면 또는 리에 걸쳐 있는 농지의 경계를 조정해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, 지역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- 향후 관련 필지의 공부 정리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